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7년 9월 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8월 30일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9월 3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7. 9. 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기획재정국장 조 성 린)

가. 개정이유

-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여 유사종목인 지방세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(안 별표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